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. 10. 17 선고 2017가단54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김학식

변론 종결 2017. 9. 19.

판결 선고 2017. 10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,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보령시 C 답 2,387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2014. 1. 21.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3. 12. 26.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'임의경매로 인한 매각'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나.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4. 1. 21. 접수 제1679호로 '2014. 1. 2.자 매매'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가 경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락대금을 납부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2,700만 원을 차용하였고,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. 1.경 '차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2,7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면,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'(이하 '이 사건 약정'이라 한다)이 체결되었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,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13,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증인 D의 증언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D는 이 사건 토지상의 비닐하우스 형태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,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거주지 확보 등을 위해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줄 것을 부탁한 점, ② 부족한 경락대금 2,7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D인 점, ③ 증인 D는 "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증인이고, 피고에게 돈을 변제해야 할 사람도 증인이었으며, 돈을 다 변제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사람도 증인이다."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갑 제7, 14,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수현